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31. **제 천 시 장**
 나. 회부일자 : 2007. 8. 31.
 다. 상정일자 : 2007. 9. 7.(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혁신흥보팀장 함건택)

가. 제안사유

- 제천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천시 행정의 발전과 투명성 증대
-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참여 및 시민제안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함

나. 주요내용

- 시민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위한 제천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시정평가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7조)
 - 시정평가단 구성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정함(안 제8조)
 - 시정평가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9조)
-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시민제안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시장의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제도적으로 명시(안 제13조)
 - 제안자의 자격을 명시(안 제14조)
 - 시민제안 채택에 따른 시상금 및 부상 수여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시민참여에 따른 재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주요정책 시행에 앞서 전문성 및 다양성과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며
- 각종 시책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안의 심의, 자문, 평가 등을 함에 있어 참여한 주민에게 수당 등 관련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일정 사안에 대하여 몇몇의 특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다 폭넓은 다수시민의 포괄적인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시정평가단 발대식을 2007. 5. 29일 가졌지요?(박기석 의원)
- 어떤 근거에 의하여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위촉하여 시행은 했는지요?(박기석 의원)
- 시정평가단이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선발 과정부터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이 선발자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박기석 의원)
- 시정참여단의 활동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요?(강현삼 의원)
- 시정평가단에 대한 구성에 대한 조례는 약화시키고,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시상 규정을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강현삼의원)

나. 답변요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 예, 그렇습니다.
-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추천 및 자의에 의한 125명의 모집자 중에서 일단 6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교수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기존 타 조직단체에 활동중인 분들은 배제를 하였습니다.
- 없습니다.
- 시정평가단의 내용에 있어 그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해서라도 제안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리는 것에 동의 합니다.

5. 소수의견

수정안 검토

6. 토론요지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시민의 의견조사 실시조항은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거리감이 있고 오히려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근거로 악용 소지가 있는 등 몇가지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코자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9. 7.

제 안 자 : 박기석 의원

1. 수정이유

-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여 행정의 발전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것이나, 제12조2항의 내용을 비롯한 몇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정 취지와 거리감이 있고 오히려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문을 제정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2. 수정 주요골자

- 제6조 ①항의 내용은 존치하고 숫자 ①을 삭제 하며 내용중 시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에서 충분한을 삭제
- 제7조 (시정평가단의 기능) ①항을 내용은 존치하고 ①항 숫자만 삭제 하며, ②항 삭제
- 제7조 1호 삭제 및 제7조 각호 중 2,3,4호를 각각 1,2,3호로 수정하되, 2호의 내용에서 제천시 시정 평가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자문 중 감시와를 삭제하여 제천시 시정 평가 및 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하며
- 제9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 제4장 주민의 의견조사 및 제안을 시민의 제안으로

- 제12조 및 ①, ②, ③항 삭제
- 12조 삭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 제18조 ②항 중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회의,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에
서 시민평가단을 시정평가단으로 하며,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 토론회를
삭제 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시정평가단 운영을 위한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로
- 제19조를 제18조로 수정함.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6조 ①항의 내용은 존치하고 숫자 ①을 삭제 하며 내용중 시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에서 충분한을 삭제
- 제7조 (시정평가단의 기능) ①항을 내용은 존치하고 ①항 숫자만 삭제 하며, ②항 삭제
- 제7조 1호 삭제 및 제7조 각호 중 2,3,4호를 각각 1,2,3호로 수정하되, 2호의 내용에서 제천시 시정 평가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자문 중 감시와를 삭제하여 제천시 시정 평가 및 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하며
- 제9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 제4장 주민의 의견조사 및 제안을 시민의 제안으로
- 제12조 및 ①, ②, ③항 삭제
- 12조 삭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 제18조 ②항 중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회의,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에 서 시민평가단을 시정평가단으로 하며,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토론회를 삭제 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시정평가단 운영을 위한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로
- 제19조를 제18조로 수정함.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시민참여 보장) ①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등 단계별로 시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제6조(시민참여 보장) 시민의 정보를 얻고
제7조(시정평가단의 기능) ①시정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시정평가단의 기능) 시정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천시 장·단기 비전사업 및 주요 혁신사업에 관한 평가 및 의견제출 2. 제천시 시정 평가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자문 3. 시정 발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제안 및 건의 4. 시민생활불편 사항 등의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②평가단장은 필요할 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 1. 제천시 시정 평가 및 정책에 대한 자문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제9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주민의견 조사 및 제안 제12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민의 제안 제12조(삭제)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u>제13조</u> (시민의 제안) 현행과 같음	<u>제12조</u> (시민의 제안) 제정안과 같음
<u>제14조</u> (제안자의 자격) 현행과 같음	<u>제13조</u> (제안자의 자격) 제정안과 같음
<u>제15조</u> (제안의 채택 기준)현행과 같음	<u>제14조</u> (제안의 채택 기준)제정안과 같음
<u>제16조</u> (제안의 권리 승계) 현행과 같음	<u>제15조</u> (제안의 권리 승계) 제정안과 같음
<u>제17조</u> (시장) 현행과 같음	<u>제16조</u> (시장) 제정안과 같음
<u>제18조</u> (재정 및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제7조 및 제8조의 <u>시민평가단</u> 운영을 위한 회의, <u>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토론회</u>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u>제17조</u> (재정 및 지원)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7조 및 제8조의 <u>시정평가단</u> 운영을 위한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u>제19조</u>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18조</u>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서명서

의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김 병수	3.	
강 천습	B	
박 마하	A	
최 거중	C	
박기식	43-213	